

여성과 ICT: 지속가능발전목표 5 (양성평등과 여성권익향상)의 이행

김태은* · 전선민**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ICT와 같은 혁신적 기술의 기여가 기대되며 ICT는 양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권한, 역량강화에 관한 SDG 5의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의 ICT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의 증가는 현재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 및 ITU 등 국제기구는 ICT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용의 증가를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SDGs 이행의 맥락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CT의 급속한 확산과 그 막대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장애요인으로 남성에 비해 ICT의 접근과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ICT 접근과 이용의 성별격차 해소는 여성들의 권익향상 뿐 아니라 시장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ICT 국제개발협력력과 여성 ICT 인력양성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 2

II. SDGs와 여성 / 3

III. UN 및 ITU의 “여성과 ICT” 관련 활동 / 4

1. UN Women(유엔 여성기구) / 5

2. 브로드밴드위원회 / 7

3. ITU / 11

4. UNESCO / 14

IV. 여성과 ICT: 현황 및 과제 / 15

V. 결 론 / 1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041, lmy94@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원, (043)531-4182, jsmina@kisdi.re.kr

I. 서 론

향후 15년간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틀이 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향상은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SDGs의 전반적인 목표들에 관련되는 범분야적(Cross cutting)목표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향상은 MDGs를 포함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은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2014년 현재 헌법에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143개국이나, 이는 역으로 52개 국가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법적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사회규범, 관습, 인식, 기타 요소들이 직간접적으로 양성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전세계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4%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여성 국회의원 수가 전체국회의원의 22%에 지나지 않는다면, 35%의 여성이 배우자를 포함한 남성으로부터 신체적·성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SDGs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나, 경제·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ICT와 같은 혁신적 기술은 양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권한, 역량강화와 관련하여서도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SDG 5는 세부목표 5.b에서 여성의 권한 및 역량강화를 위해 특히 ICT와 같은 실행기술의 활용의 제고를 명시하고 있다. 여성의 ICT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의 증가는 현재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SDGs의 목표5를 포함한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과 역량강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의 이행에 있어서의 ICT의 역

1) UN Women

할과 효과를 검토하고, UN 및 ITU 등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및 연구를 정리했다.

II. SDGs와 여성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DG 5의 세부목표(targets)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SDG 5의 세부목표

	목표
5.1	모든 장소에서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
5.2	인신매매, 성적, 기타 종류의 착취 등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공공, 사적 공간에 있어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배제
5.3	미성년결혼, 조기결혼, 강제 결혼 및 여성할례 등 모든 종류의 유해한 관행 철폐
5.4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 또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세대, 가족내부의 책임분담을 통해서 무보수 육아, 간병, 가사노동을 인식하고 평가
5.5	정치 경제 공공분야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여성 참여 및 평등한 리더십 기회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행동계획 및 북경행동강령, 또한 후속회의의 성과문서에 따라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및 권리에의 보편적 접근의 보장
5.a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또한 각 국가 법에 따라 소유권 및 토지, 기타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재산,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의 착수
5.b	여성의 능력강화 촉진을 위해 ICT를 필두로 실현기술의 활용을 강화
5.c	양성평등의 촉진 또한 모든 여성 및 여아의 모든 레벨에서의 능력강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과 구속력 있는 법규의 도입과 강화

출처: UN Women(2015)에서 재정리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개정·폐기 등 법적인 조치와 관련법의 강력한 적용, 적절한 정책의 수립·이행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홍보 등 인식의 제고와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SDGs의 제반 목표들에서도 양성 평등 및 여성권익향상과 관련된 함의가 존재한다. 목표1(빈곤퇴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주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목표2(식량 안정성과 지속가능농업)와 관련하여서도 가정의 식사준비를 주로 담당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노동력의 43%를 점하는 여성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 목표3(보건)은 높은 임산부 사망률, AIDS 감염률이 해당된다. 목표6(깨끗한 물)의 경우 아직 6억 6천3백만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5개국의 여성이 물을 뜨러가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1,600만 시간에 이른다.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목표8(양질의 직업과 경제성장)의 경우, 많은 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며, 법적으로도 여성 취업에 제한이 있고 임금도 남성보다 낮다. 이러한 점에서 SDGs의 전반적인 이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향상의 이행을 통해 다양한 목표들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UN 및 ITU의 “여성과 ICT” 관련 활동

UN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의 이행에 있어서 ICT의 역할도 강조해왔다. 세계여성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간주되는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실천계획(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에서도 “여성은 ICT 기술, 지식, 접근성 향상을 통해 권한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전략목표로 커뮤니케이션 신기술에서의 표현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하도록 제시하였다.²⁾ 새천년개발목표(MDGs)도 목표3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과 목표5 모성보건 증진 등의 목표와 연계하여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포함한 제반 목표 달성에 있어서 ICT의 역할을

2) 김태은(2013)

강조한 바 있다.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와 참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ICT로의 접근과 활용,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위상이 남성에 비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SDGs의 목표 수립과 함께 제반 목표의 달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참여 증진에 있어서 ICT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UN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진행 중이다.

1. UN Women(유엔 여성기구)

2010년 7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유엔 여성기구의 설립이 결정되어 2011년 1월 출범하였다. UN의 효율성을 위한 자원 재편 차원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여성훈련원(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국제연합여성발전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젠더관련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OSAGI)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UN내 업무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간 기구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한 정책과 국제기준 등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원국들이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고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국가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³⁾

2015년 12월 WSSIS 성과 이행 점검을 위한 UN 총회 고위급 회의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고 당시 ITU와 UN Women이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여성의 권한: WSSIS 결과 및 2030의제 이행’이라는 부대행사 세션에서 “디지털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계획(Action Plan to Close Digital Gender Gap)”이 발표되었다. 동 실천계획은 디지털 성 격차의 해소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ICT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포괄적이며

3) UN Women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및 가속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 있어 여성의 공평한 참여는 21세기 여성의 권리 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 실천계획은 2016년부터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와 아디스아바바 실천계획 2015의 새로운 범세계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의 시행에 착수할 것에 앞서 post-2015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성 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로 발표되었다.

<표 2> 디지털 성 격차 해소 실천계획: 실천분야와 국제커뮤니티의 공헌

실천 분야	국제 커뮤니티의 공헌
1. 성 인지적 전략 및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국가·국제 ICT 관련 전략·정책·계획·예산안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 통합,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행·모니터링 과정에 여성의 활발한 참여 등 역량 강화,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검토 • ICT와 성 평등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과 부문적 전략과 STI 혁신 시스템 내의 성과와 ICT 연결성을 주류화 •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측정을 포함한 ICT와 성 평등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와 모니터링 도구 수립과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에 대한 ICT의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 및 분석에 대한 투자
2. 여성과 소녀의 ICT에 대한 접근 보장과 여성의 기술 접근 및 활용을 저해하는 온라인 상 위협들에 대한 완화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ICT에 대한 접근 보장과 소외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촉구(공공 접근 및 인프라에 대한 성 인지적 모델 제공, 수용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와 같은 매커니즘 활용) • ICT에서 기인한 위협들의 방지, 완화 및 대응과 소녀와 여성의 정보사회 참여 및 혜택 수여를 방해하는 불평등 요소들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 온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묘사에 대한 해결과 여성의 관점 수용을 위한 디지털 공간 제공, 자원 및 교육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 기반 문제요소 논의
3. 여성과 소녀들의 디지털 역량 구축과 여성의 요구를 충족하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와 여성들이 ICT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수 능력과 지식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이는 여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며 이러한 지원은 여성관련 기관에도 제공되어야 함 •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한 관련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지원(기술 개발에 대한 사용자 기반 접근, 성 격차를 다루는 e-governance 정책의 개발 등)

실천 분야	국제 커뮤니티의 공헌
4. 의사결정 직급을 포함한 기술 부문의 여성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녀와 여성을 위한 ICT 교육과 훈련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투자 증대와 성적 문제요소 제거(공식 및 비공식 교육에 대한 조기 참여, 여성의 고등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기회 제공 등) • 여성의 기술 분야에서의 채용, 유보 및 의사결정 직급에 대한 진출 촉진과 이를 위한 역량 구축 틀 개발(긍정적 롤 모델의 설정 등)
5. 다자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실용적 방안을 촉구하고, 기술에 대한 여성의 참여 및 접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 • 국가 내 및 국가 간 모범사례, 롤 모델 등의 공유를 위한 플랫폼 설립

출처: ITU(2015)에서 재정리

2. 브로드밴드위원회

ITU와 UNESCO가 새천년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설립한 디지털 개발을 위한 브로드밴드 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evelopment)는 여성의 디지털 통합 증진, 디지털 리터러시 훈련 및 기술배양을 통한 여성의 권한강화,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하에 성인지 어플리케이션(여성대상 폭력감시 등)의 개발 및 증진, 여성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제공 육성, 기술 훈련 및 일자리가 여성 및 소녀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사회 혁신 증진을 위한 여성의 디지털 기업가정신 증진, 온라인상에서의 소녀 및 여성 보호, 2015년 이후 의제에 대한 기여 등을 다루는 작업반(Working Group on Broadband and Gender)을 설립하였다.⁴⁾

동 작업반은 2013년 9월에 “기회를 배증하기: 여성과 소녀의 정보사회에의 포용을 제고(Doubling Digital Opportunities: Enhancing the Inclusion of Women & Girls in the Information Societ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ICT의 접근과 활용에 관한 성별간 격차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성이 정보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서 이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업체, 네트워크 사업자,

4) www.broadbandcommission.org

S/W 및 앱개발자에게도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6억 명의 여성들이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 전세계 GDP는 180억불 증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국가 ICT 정책과 국가 성인지 정책을 결합하고, 성별로 구분된 ICT 통계 및 측정을 개선하고,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 및 가격 감당성을 증진하고, 적절한 지역 온라인 콘텐츠를 개선하고, 브로드밴드 접근에 대한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⁵⁾

2015년 9월 24일 UN 브로드밴드위원회는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 상의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정부와 관련 업계들이 여성들이 온라인 상의 위협과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온라인 폭력 방지(Cyber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라는 새로운 발제문(discussion paper)을 발표하였다.

동 발제문에 따르면 수백만의 여성과 소녀들이 단지 그들의 성별 때문에 의도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은 국경이 없으며 인종, 문화,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사회전반에 걸쳐 있다고 한다.⁶⁾ 그리고 ICT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VAWG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이버 VAWG의 출현을 초래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3명중 1명의 여성이 일생동안 어떤 형태로든지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데⁷⁾ 이 중 사이버 VAWG는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 여성의 73%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온라인 폭력을 경험하는 미국인의 57%가 여성이라고 한다.⁸⁾

5) Broadband Commission(2013)

6) www.un.org/en/women/endviolence/

7) 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facts-and-figures

8) www.onlineharassmentdata.org/release.html

[그림 1] 여성에 대한 폭력



출처: UN Women

이러한 사이버 VAWG는 인터넷 상의 여성의 지위에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18세에서 26세의 여성들이 신체적 위협이 따르는 스토킹과 성적 위협을 포함한 사이버 VAWG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 발제문은 사이버 VAWG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모든 여성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고자하는 노력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지만 86개국에서 시행된 설문에서 사법당국의 74%가 사이버 VAWG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 5명 중 한명은 온라인 폭력이 거의 처벌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우려로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여성과 소녀들이 사용하기 안전하게 하고 이들의 온라인상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사이버 VAWG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의 시행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기관, 산업계와 모든 네티즌들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중요한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서의 산업계의 역할을 강조하며 ISP 기업, 휴대폰 회사, 소셜 미디어 사이트, 온라인 데이트와 게임 사이트 등 IT 기업들이 사이버 VAWG를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유해 콘텐츠 삭제 절차, 사법당국과의 협조, 위법행위를 한 계정 삭제 등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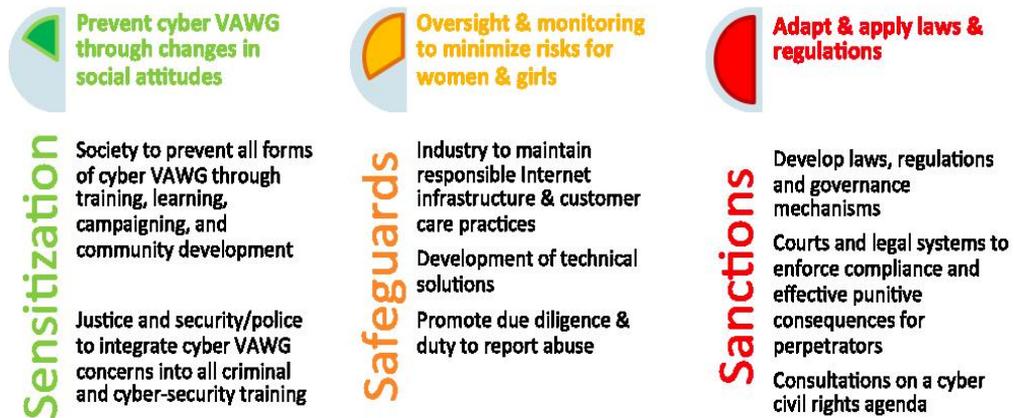
동 발제문은 사이버 VAWG를 막기 위해 인식제고(Sensitization), 안전조치(Safeguards), 제재(Sanctions)라는 세 가지 ‘S’를 권고하고 있다.⁹⁾

- 공공의 인식제고를 통한 예방책 - 온라인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태도와 기준을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과 정책 필요
- 온라인상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안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 강화 - 오프라인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안전조치인 여성보호소, 긴급 센터, 핫라인, 교육 등과 같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급변하는 인터넷 상황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필수적. 이는 산업계, 시민사회와 정부 등 디지털 게이트키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사이버 VAWG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시행

SDGs의 목표이기도 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ICT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존엄성과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여성의 인터넷 접근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SDGs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이버 VAWG가 없는, 여성에게 더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Broadband Commission(2015)

[그림 2] 3 S(Sensitization, Safeguards, Sanctions)



출처: Broadband Commission(2015)

3. ITU

ITU는 1990년대 말부터 주요 세계회의의 결의 및 권고등을 기반으로 여성과 ICT에 관한 전향적인 접근을 해왔으며, ITU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주류화 해왔다.¹⁰⁾

(Girls in ICT Day) ITU는 2011년부터 여성과 여학생의 ICT부문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정책·교육·고용 차원에서의 고려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주 목요일을 국제 “Girls in ICT Day”로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동 행사는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의 ICT 및 과학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 고취를 목적으로 관련 부처·기업 등 방문 체험 행사, 세미나, 워크숍, ICT 캠프, 컨퍼런스, 멘토링, 인턴십,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ITU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개국 이상에서 5,300건의 행사가 개최되어 17만명 이상의 여학생들과 여성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ITU는 2014년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결의 70을 통해 회원국과 부문회원회에서 Girls in ICT Day를 매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10) 김태은(2013)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¹¹⁾

2016년 Girls in ICT Day행사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Expanding Your Horizons이라는 비영리기관과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STEM 직종은 남성중심적이며 수학이나 공학 등 과학은 어렵다는 STEM관련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UNESCO에 따르면 공학 전공자 중 여성은 18% 정도이며 유럽의 경우 평균 16.6%, 미국은 평균 20%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여학생들이 STEM 관련 직업을 선택할 경우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분야 진출을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여학생들의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뿐 아니라 부모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학계, 이공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미디어의 역할도 요청되고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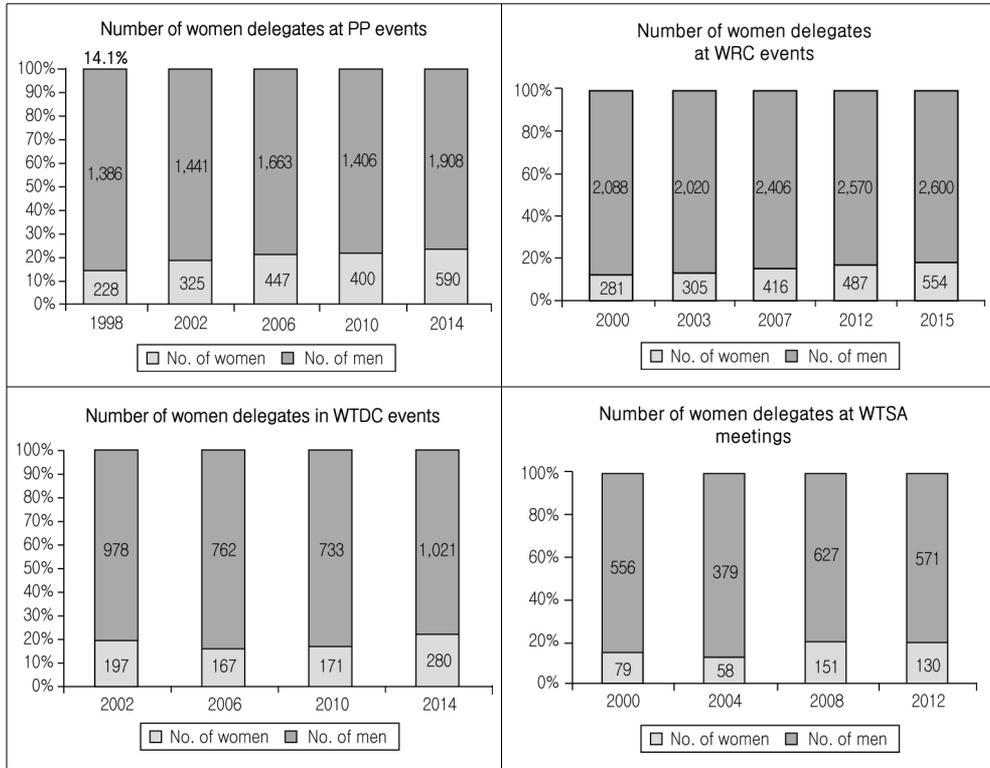
(여성 대표단 참여 강화) 2013년 ITU 이사회에서 채택된 ITU 성 평등 및 주류화 정책(GEM)은 ICT의 혜택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TU 내에서도 성인지적 관점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6년~2019년 ITU 전략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여 올해부터 ITU 회의에의 여성의 참여도 추적조사를 부문별로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2012년 WTSA(18.5%), 2014년 전권회의(23.6%), 2014년 WTDC(21.5%), 2015년 WRC(17.6%) 등 부문별 주요행사의 여성 참여비율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¹³⁾

11) <http://girlsiniict.org/>

12) <http://www.itu.int/en/action/women/girls-ict-day/2016/Pages/default.aspx>

13) ITU(2016a)

[그림 3] ITU 주요회의의 여성 대표단 추이



출처: ITU(2016a)

ITU는 회원국과 부문회원에게 각 대표단에 여성의 비중을 높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회의 초청장에 포함하여 발송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행사에 성비가 균형적인 패널을 구성하도록 ITU 모든 부서에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국에 회의나 스터디그룹의 의장직과 부의장직에 여성 후보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¹⁴⁾

더 많은 여성이 ITU의 의사결정과정과 토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여성 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존의 ITU가 진행해오던 여성대표단 오찬모임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로 전파관련 협상에서의 여

14) ITU(2016b)

성의 참여 강화와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시니어 여성 대표단의 주니어 여성 대표단에 대한 멘토링과 ICT 분야에서의 여성의 주도적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ITU는 오는 10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6)에서도 이러한 젠더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대표단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¹⁵⁾

4. UNESCO

유네스코에 따르면 2014년에는 17억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eMarketer, 2014). 스마트폰과 온라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도국에서 온라인에 연결된 여성인구는 남성에 비해 25% 적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45%로 그 격차가 증가한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6억명의 이상의 여성이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유네스코는 이를 위해 다음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¹⁶⁾

(YouthMobile Initiative) 유네스코의 YouthMobile 이니셔티브는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들의 모바일 앱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진과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지역 문제 해결과 고용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동 이니셔티브는 broadband 연결성이 저조한 지역의 청년층에게 자신들의 스마트폰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매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학습, 사진촬영, 게임 등에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동 이니셔티브는 2017년까지 최소 2만5천여명의 청년층의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 스마트폰 앱 개발이 즐겁고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며 창업과 고용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역과 국내외의 ICT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5) ITU(2016b)

16) UNESCO(2016)

하고 있다.

특히 ITU의 Girls in ICT Day와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 여학생들에게 모바일 앱 개발 등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성별 격차를 줄이고 ICT 부문에 대한 여성의 직업 관심도 제고,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 각 국가의 전략,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¹⁷⁾

(Mobile Learning Week, MLM) MLM은 전세계 IT 전문가들이 모여 모바일 기술의 효율성, 효과성 및 보급성 등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며 특히, 소외된 지역과 개발낙후 지역들에서 모바일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2015년 MLM에서는 어떻게 양성평등을 위해 기술이 활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여성들의 ICT와 STEM 분야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있어 유네스코는 여성들의 기술사용과 기기 소유를 증진하고 최신기술과 장치에 어떤 성차별 적인 요소가 없을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동 분야에 대한 여성 역할모델을 찾아 젊은 여성층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학생과 여성이 온라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도 강조하고 있다.¹⁸⁾

IV. 여성과 ICT: 현황 및 과제

GSMA(GSM Association)는 “성별격차의 해소: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모바일 접근과 사용(Bridging the Gender Gap: Mobile access and usage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보고서를 통해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의 ICT 관련 성별 격차를 파악하였다.¹⁹⁾ 이동전화의 급속한 확산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이

17) <http://en.unesco.org/youthmobile>

18)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icts/m4ed/mobile-learning-week/>

19) 동 보고서는 GSMA의 *Women and Mobile: A Global Opportunity: A study on the mobile phone*

동전화의 혜택이 단순한 통신과 정보에의 접근이 아닌 생활전반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별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ICT는 여성에게 매우 큰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빈곤과 차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GSMA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의 17억 명의 여성이 이동전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2억 명이 적은 것이며, 평균 14%의 차이가 난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38%나 덜 소유하는 등 중·저소득 국가나 지역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이 이동전화를 소유할 경우에도 사용 행태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데, 여성은 모바일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Messaging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GSMA는 여성의 이동전화 소유 및 이용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다섯가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비용의 문제이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여성들이 이동전화를 구입하고 이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더욱 저렴한 단말기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안전과 희롱(harassment)의 문제이다. 이동전화 소유에 따른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통신을 통한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전달문제와 기술적 식자율(technical literacy)과 관련된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인습이다. 이동전화의 구입을 직접할 수 없다면, 집안에서 이동전화 이용을 금지한다면 하는 것들이다. 다섯 번째는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의 부재와 편견을 들고 있다.

GSMA는 이러한 경제·사회적·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이동통신 소유와 이용이 지체되고 여성들이 이동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와 권고를 제기하면서 특히 2억 명의 여성이 이동통신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경우, 1,700억 불의 시장기회가 생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gender gap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2010)의 후속연구임

V. 결 론

ICT 인프라와 신기술, 서비스와 ICT가 내포하는 혁신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추구하는 경제발전과 지속가능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SDGs의 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향상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합의의 이행에 기여한다는 맥락에서 한국도 ICT ODA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SDG 5의 세부목표들이 기반하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문은 제한적이겠지만 여성정보화를 포함한 정책경험의 공유나, 혁신적인 솔루션의 개발과 BOP(Bottom of Pyramid) 비즈니스 차원의 지원 등은 가능할 것이다. 여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ICT 교육 훈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만의 발전이 아닌 범세계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과 ICT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ICT 부문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당면하고 있는 성별격차의 현안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접근과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및 경력에서의 불균형이라고 할 것이다. ITU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Girls in ICT Day, TechGirls와 같은 인식개선 및 제고 노력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은 매우 시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은 (2013), “여성과 ICT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합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Broadband Commission (2013). “Doubling Digital Opportunities; Enhancing the inclusion of women and girls in the information society.”

Broadband Commission (2015). Cyber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TU (2015). “Action plan to close digital gender gap”.

___ (2016a). S16-CL-INF-1,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ITU conferences and meetings.

___ (2016b). S16-CL-C-6, ITU’s activities related to Resolution 70(Rev. Busan, 2014).

UNESCO (2016). Harnessing ICTs for Greater Access to Education for Girls and Women:STEM Education at UNESCO, Rovani Sigamoney.

GSMA (2016). Bridging the gender gap; Mobile Access an usage in low-and moddle-income countries.

UN Women (2014).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progra,mming, Guidance note.

_____ (2015).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L Opportunities and Challenges.